

의안번호	2208395
의 퇴 인	서천호의원
회 답 일	2025.05.02.
추계번호	25C1138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 (의료취약지의 지정·고시)	-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의료취약지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4항) 3. 소아과, 산부인과 등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·운영(신설)	의무규정
2	안 제13조 (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등)	- 시·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·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에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<u>지정하거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음</u>(제1항) － (현행) 지정 － (개정) 지정하거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·운영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조 (의료취약지의 지정·고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3조 (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등)	

2. 상세 사유

□ 의료취약지의 지정·고시(안 제12조)

-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에 소아과, 산부인과 등 부족한 의료 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
-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설치 및 운영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유형, 규모 및 개소 수 등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하나, 동 조문은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으로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 - － 현행법 제13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에는 이미 “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”이 설치·운영되고 있으나, 개정안은 그 범위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이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
 - － 참고로, 개정안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¹⁾가 설립·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소(보건의료원 포함)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,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말함
 - － 현재 의료 및 분만취약지에 70개소의 분만(54개소), 소아청소년(10개소), 인공신장실(6개소) 거점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, 보건복지부는 “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” 사업을 통해 각 시설의 신규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(2025년 기준 175억 7,500만원, 국비 50%)하고 있음

1)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2조(공공단체의 범위)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.

1.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
2.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
3.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
4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
5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
6. 「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
7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
8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
9.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
10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
11. 「암관리법」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
12.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
□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등(안 제13조)

-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직접 거점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
- 시·도지사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 및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위의 안 제12조와 유사하게 신규로 설치할 의료기관의 유형 및 규모, 개소 수 등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선언적 규정으로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- 2023년 12월 기준, 의료 및 분만취약지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거점의료기관은 아래 [표 1]과 같으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과 군립병원 등도 이미 포함되어 있음

[표 1] 의료 및 분만취약지 내 지원 병원

구분	지역	개소 수	기관명
분만 취약지	경기	2	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, 김란미즈산부인과의원
	인천	1	웅진군 백령병원
	강원	8	삼척의료원, 인제고려병원, 한마음 산부인과의원, 양구성심병원, 철원병원, 영월의료원, 속초의료원, 홍천아름다운병원
	충북	5	영동병원, 보은군순산부인과, 충주의료원, 괴산성모병원, 연세미즈 산부인과 의원
	충남	4	건양대 부여병원, 참산부인과의원, 홍성의료원, 모아산부인과의원
	전북	6	진안군의료원, 고창종합병원, 남원의료원, 김제우석병원, 현대산부인과의원, 임실병원
	전남	9	강진의료원, 고흥종합병원, 영광종합병원, 완도대성병원, 진도한국병원, 보성아산병원, 해남종합병원, 함평성심병원, 미래여성의원
	경북	11	예천권병원, 울진군의료원, 영주기독병원, 영남제일병원, 안동의료원, 영천제일병원, 상주적십자병원, 김천제일병원, 안동병원, 포항의료원
	경남	7	밀양제일병원, 거창적십자병원, 경남 인구보건복지협회 하동여성 산부인과, 삼성합천병원, 자모산부인과의원
	제주	1	서귀포의료원
소아 청소년과	강원	2	정선군립병원, 철원길병원
	충북	1	보은한양병원
	전북	1	진안군의료원
	전남	2	완도대성병원, 진도전남병원
	경북	2	영덕아산병원, 영남제일병원
	경남	2	남해병원, 삼성합천병원
인공 신장실	강원	2	양구우리병원, 정선군립병원
	전남	1	완도대성병원
	경북	2	울진군의료원, 영남제일병원
	경남	1	창녕서울병원

자료: 보건복지부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